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64
------	------

2025. 6. 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6.16.)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는 클라이밍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시립체육시설로, 위탁기간이 2025.12.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나. 자립 운영이 가능한 경영 능력과 클라이밍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추진 필요성

-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은 클라이밍 체험·교육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경험과 시설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자립형 경영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성이 필요함

다. 위탁사무 내용

- 체험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수익창출을 통한 운영비 확보
- 홍보 및 마케팅 등 센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
- 주변시설 및 환경과 연계된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 등 관광 활성화
- 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시설의 사용, 이용자관리,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 사용·수익허가(근린생활시설 및 자판기 임대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등

라. 제3자 재위탁 : 해당

○ 필요성 : 산악문화체험센터 내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3자 재위탁 필요

○ 제3자 재위탁 중(예정)인 사무 : 1건

- 카페 운영 1건 (현 계약기간 : 2024.9.13. ~ 2025.12.31.)

마. 시설개요

○ 시설명 :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112

○ 규모 : 부지 3,000㎡, 연면적 2,197.68㎡(지하1층/지상2층)

○ 주요시설 : 실내볼더링장, 외부암벽장, 시청각실, 기획전시실 등

○ 위치도



바. 민간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26.1.1. ~ '28.12.31.)

사.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아.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자립형으로 운영비 지원 없음

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¹⁾에 따라, 의회로부터 민간위탁 동의(2019.12.16.)를 받은 이후 위탁기간 만료와 재계약 횟수 제한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나. 산악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현황

- 산악문화체험센터는 시민들의 안전한 산악활동 및 모험 체험활동 등을 통해 산악이라는 스포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연면적 2,197.68㎡(지하1층/지상2층) 규모로 실내볼더링장, 외부암벽장, 시청각실, 기획전시실 등을 갖추고 있음.
- 산악문화체험센터는 2020.5.20. 최초 위탁이후 재계약을 통해 2025.12.31.까지 위탁계약을 연장하였으며, 현재 (사)박영석산악문화진흥회와 마포구체육회가 컨소시엄을 이뤄 사무위탁을 수행하고

1)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있음.

주요 사무로는 ▶클라이밍 체험·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시설 대관 및 전시기획 등 콘텐츠 개발·운영, ▶ 지역 연계 사업 운영, ▶산악문화체험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임대·대관 등이 있음.

- 위탁기간(2021년~2024년) 산악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의 성과를 살펴보면 연도별 프로그램 이용자와 전시실 및 카페 이용자의 증감이 반복되고 있으며, 매출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지 못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산악문화체험센터 주요 실적 >

(단위 : 명)

구 분	프로그램 이용자	전시실 & 카페 이용자	계
2021년	23,327	31,030	54,357
2022년	28,968	41,836	70,804
2023년	26,649	47,225	73,874
2024년	30,951(월평균 2,579)	25,106(월평균 2,092)	56,057(월평균 4,671)

(단위 : 명, 천원)

구 분	총 계	일차체험	야간체험	비아페라타	톱로핑 체험	월강습	장애인 야간체험	단체일반	단체장애인	일자유실습외	매 출
2021년	18,230	7,435	5,419			1,119	4	201		4,052	210,097
2022년	22,975	8,272	5,928			1,973	325	371		6,106	285,764
2023년	22,171	6,982	5,302		199	1,437	26	1,273	659	6,293	369,353
2024년	26,306	8,001	4,635	273	333	1,513	92	1,371	1,399	8,689	347,767

- 또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실시한 민간위탁 종합성가평과를 살펴보면, 종합점수 100점 만점에 56.19점으로 민간위탁 사업의 전 영역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평가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긍정적 평가에서는 접근성 문제해소를 위해 무료 주차 제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확대가 있었으며, 부정적 평가에서는 조직 내 갈등, 운영 인력 감소에 부적절한 대

처, 성과관리 체계 미흡 등이 있었음.

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본 동의안은 산악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을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임.

< 산악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위탁기간	2026.1.1.~2028.12.31.(3년)
위탁유형	자립형
위탁범위	- 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전시계획에 따른 콘텐츠 개발 및 전시 - 체험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수익창출을 통한 운영비 확보 - 홍보 및 마케팅 등 센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 - 주변 시설 및 환경과 연계된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 등 관광 활성화 - 시설의 사용, 이용자관리,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 사용 수익허가(근린생활시설 및 자판기 임대 등)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등
선정방법	수탁기관 공개모집
2026년예산(안)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운영비 지원은 없음

- 올해 실시된 2025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서도 산악체험센터 운영은 ‘적정’ 심의 결과를 받은 바 있음.
- 또한 관광체육국이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를 살펴보면 ▶해당사무를 수행할 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충분히 존재하여 서비스 공급의 경쟁적 시장여건이 조성되어 있으며 ▶클라이밍 체험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노하우가 요구되고 체육시설에는 법정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가 상주해야하므로 민간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산악문화체험센터의 경우 예산지원을 통해 사무를 운영하는 시설형 위

탁과 사무형 위탁과는 다른 자립형 사무위탁임에 따라 민간위탁자가 위·수탁 계약체결 이후 과도한 이윤 창출만을 시도하여 시민의 접근성 제약 등 공리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설위탁자를 서울특별시체육회와 같은 공익단체 혹은 공직유관단체가 그 사무를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임.

- 또한 산악문화체험센터는 세계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故박영석 산악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성격으로 건립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위·수탁자는 수익 창출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콘텐츠 개발 및 전시 기획에도 경쟁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산악문화체험센터의 향후 3년간 예상 수입과 지출에 대한 원가산정 결과는 3년 동안 총 약 3천만원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확인되며 위탁기간 마지막 해에는 7백만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것을 봤을 때, 해당 시설이 시설운영의 수익금만으로 운영비용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 자립형 민간위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산악문화체험센터 원가계산 개요 >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수입 계	424,709	424,537	424,366	1,273,612
비용 계 ¹⁾	397,247	414,011	431,489	1,242,746
수지차이	27,462	10,526	△7,123	30,865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한 민간위탁 사무 이윤 100분의 5 미반영

- 아울러 현 수탁기관의 경우 민간위탁 지도점검 시 ▶강사 휴무에 따른 대시민 예약 차단 및 취소 ▶사업계획서 상 프로그램 미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저조 ▶직원 인건비 미지급 발생 등 협약사항 위반이 빈번하

게 있는바, 관광체육국은 위·수탁 협약 체결만으로 민간위탁 사무관리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업체에 대한 상시적이고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해 시민을 위해 마련된 시설이 온전히 시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0명, 참석위원 8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864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는 클라이밍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시립체육시설로, 위탁기간이 2025.12.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 나. 자립 운영이 가능한 경영 능력과 클라이밍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추진 필요성

-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은 클라이밍 체험·교육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경험과 시설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자립형 경영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성이 필요함

다. 위탁사무 내용

- 체험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수익창출을 통한 운영비 확보
- 홍보 및 마케팅 등 센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
- 주변시설 및 환경과 연계된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 등 관광 활성화
- 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시설의 사용, 이용자관리,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 사용·수익허가(근린생활시설 및 자판기 임대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등

라. 제3자 재위탁 : 해당

- 필요성 : 산악문화체험센터 내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3자 재위탁 필요
- 제3자 재위탁 중(예정)인 사무 : 1건
 - 카페 운영 1건 (현 계약기간 : 2024.9.13. ~ 2025.12.31.)

마. 시설개요

- 시설명 :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112
- 규모 : 부지 3,000㎡, 연면적 2,197.68㎡(지하1층/지상2층)
- 주요시설 : 실내볼더링장, 외부암벽장, 시청각실, 기획전시실 등

○ 위 치 도



바. 민간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26.1.1. ~ '28.12.31.)

사.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아.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자립형으로 운영비 지원 없음

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제23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1. 산악문화체험센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각호와 같다.
.....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김예정 (☎2133-2748)